

— 진주권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 —

(의안번호 제433호)

심사보고서

1997. 9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8. 1	고 성 군 수
나. 회부일자 : 1997. 8. 4	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7. 9. 4	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96. 5. 28 개정한 진주권행정협의회 명칭 부적정으로 자치단체 공통 특성을 살린 명칭으로 개정
- 민선 자치시대 정착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 농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, 자치단체 확대 조정

3. 주요골자

-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 (안 제명 및 제2조)
 - 진주권행정협의회 → 서부권행정협의회
- 협의회구성 자치단체 확대 조정 (안 제3조)
 - 진주시, 사천시, 고성군, 산청군(4개시군) → 진주시, 사천시, 고성군, 하동군
산청군(5개시군)
- 불필요한 부분 삭제 및 합리적 정비
 - (현행규약 제5조, 안 제5조제1항, 안 제10조제1항, 안 제14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행정협의회의 규약중 명칭변경과 자치단체구성 등 불필요한 부문을 삭제 및 합리적으로 정비함은 민선자치시대 정착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체간 협의회를 통한 합리적인 조치로써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년간 몇회정도 개최되는지
- 답 : 1년에 1~2회정도 개최됩니다만 회의운영이 아직 미숙한 실정임.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7. 9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